

고성군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(의안번호 제662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1. 28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1. 29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0. 12. 27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행정규제개혁 추진과 관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·완화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공단지 조성 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 조항 삭제
(안 제5조제2항)
-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기준 완화(안 제6조)
- 공단 입주업체 자격 완화(안 제15조제1항)
- 양도와 대여금지 조항 삭제(안 제22조제1항, 제2항)
- 환매권 유보조항 삭제(안 제23조)
-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비용 부담조항 삭제(안 제25조제2항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없애므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부담과 불편을 줄이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이중으로 규제된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지나

- 안 제22조(양도와 대여금지) 삭제시 분양받은 공업단지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의 우려는 없는지, 안 제25조(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) 제2항의 삭제시 공단안에 설치하는 공동시설의 유지·보수비 부담과 유지·보수 관리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없는지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중점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0. 12. 2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